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 : 제2013-81호  
 예고기간 : 2013. 3. 20 ~ 4. 29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55)

## ㉮ 개정이유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판급공사 입찰시 산업재해발생을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 다.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 : 제2013-98호  
 예고기간 : 2013. 3. 21 ~ 4. 30  
 전문참고 :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2~45)

## ㉮ 제안이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확대하는 한편,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복합제품의 인증근거를 신설하고, 자체검사 기록 보존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부적합율이 낮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며, '전자저울'을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

- 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개발제품(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취침등)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신규 지정(별표3의2)
- 다. 냉·온수기 등과 같은 복합기기에 대한 인증 근거를 신설하고, 자체 검사기록 보관의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제6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9조제4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안내



**부 령 : 제2013-4호**  
**공포일자 : 2013. 4. 1**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044-201-3550**  
**전문참고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발주와 관련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배점 및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감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안 제24조제2항)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방식(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을 채택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와 그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기준이 되는 대상 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함

#### 나. 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원 전문교육 인정(안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신설)

감리원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다. 각종 서식의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등)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 관련 법령서식의 개정 방침에 따라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유사서식을 통합하고 민원처리 흐름도를 포함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 1 광역시와 일반시 통합감리시 이동거리기준

### • 현장개요

1. 현장소재 : A현장=경남 양산시, B현장=부산광역시
2. 현장간 이동거리 : 25km

### • 질의내용

- 전력기술관리법에는 통합감리 현장 간 이동거리 제한이 광역시 10km, 기타 30km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통합감리 현장이 광역시와 일반시 2개소에 있는 경우에 거리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제1항에서 통합감리는 인접한 공사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 (특별·광역시인 경우 10km)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사현장이 광역시와 일반시에 각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현장 간 이동거리기준을 모두 충족(현장 간 이동거리 10km미만) 되어야 통합감리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대상인 현장은 통합감리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29)

## 2 설계업 미등록업체 소속 근로자 설계 적법여부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면허가 없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설계사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는 제28조제5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의 설계도서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호에 따라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계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에서 수행한 개인의 설계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7. 6)



#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 발전설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발전설비 용량이 10kW인지, 20kW인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10kW이하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전기사업용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압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은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 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해 사용을 중지한 경우)
  - 다. 농사용전기설비(전기공급지점부터 사용설비까지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설비용량 20kW이하의 발전설비

- 결론적으로, 10kW가 초과되는 발전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이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은 2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5. 27)

## BTO사업의 점유자 문의

- 사업현황
  - BTO로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 주무관청 : OO시,
  - 사업시행자 : A사(SPC),
  - 운영사 : B사

-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소유자는 BTO특성상 주무관청인 OO시가 되는데, 점유자는 본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B사인지, 아니면 단순 사업시행자인 A사인지 질의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에서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의 관계로 점유권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당하수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A사)를 점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5. 27)